세종특별자치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 시 가 스 공 급 규 정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0. 12. 1.

JB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 1

제2조 의 무 ---------- 1

제3조 적 용 ---------- 1

제4조 용어의 정의 ---------- 1

제 2 장 가스사용 신청 및 계약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 4

제6조 승낙의 의무 ---------- 4

제7조 계약의 성립 및 변경 ---------- 5

제8조 계약의 준수 ---------- 6

제9조 해 약 ---------- 7

제10조 계약소멸 후의 관계 ---------- 8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 공사시행 ---------- 8

제12조 공급 전 안전점검 ---------- 9

제13조 가스계량기 ---------- 9

제14조 시설분담금 ---------- 11

제15조 공사비 부담 ---------- 11

제16조 검사 요청 ---------- 12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7조 검　　침 ---------- 13
제18조 계량 단위 ---------- 13
제19조 사용량의 산정 ---------- 13

제 5 장 요　　금

제20조 요금 산정 ---------- 14
제21조 가스요금의 구분 ---------- 15
제22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16
제23조 10만원단위 미만 처리 ---------- 17
제24조 요금계산의 정정 ---------- 18
제25조 보 증 금 ---------- 18
제26조 이의신청 ---------- 19

제 6 장 공　　급

제27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 20
제28조 공급 중지 ---------- 21
제29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 22
제30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 23

제 7 장 안　　전

제31조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책임 및 개인정보의 보호 ---------- 23
제32조 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 24
제33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책임 ---------- 24
제34조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 25

제 8 장 기 타

제35조 고객센터 운영 <삭제>
제36조 사용장소의 출입 ---------- 25
제37조 가스성분 검사 등 ---------- 26
제38조 문서보관 ---------- 26
제39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경감 ---------- 26

부 칙 ---------- 27

별 표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 29
[별표2] 시설분담금 ---------- 30
[별표3] 해제수수료 <삭제>
[별표3] 가스요금표 ---------- 32
[별표4]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 ---------- 33
[별표5]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 ---------- 34
[별표6] 가스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 ---------- 35

별 지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 36
[별지 제2호 서식] 도시가스 사용 신청서 ---------- 37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가스사용시설 변경신청서 ---------- 38
[별지 제4호 서식] 가스사용중지(폐지) 신청서 ---------- 39
[별지 제5호 서식] 가스사용중지 해제 신청서 ---------- 40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 41
[별지 제7호 서식]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 43
[별지 제8호 서식]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보서 ---------- 4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0조에 의하여 JB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 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주민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합니다.

② 회사는 이 규정과 법 및 그 밖의 관계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도시가스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고,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2020. 12. 1. 신설)

제3조(적 용)

이 규정은 회사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허가한 공급권역 내의 가스사용자 및 가스시설시공자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kPa(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의 총발열량을 말합니다.
2.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3.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4.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합니다.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 끝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7.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 니다.
8.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 니다.
9.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합니다)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가스계량기와 이들 시설에 부속된 설비를 말합니다.
11.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2.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사용예정자·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합니다.
13.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4. “공사준공”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시설공사 완료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회사 입회하에 시공확인을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15.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6.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 가스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7. “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가.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18.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암반, 개발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9. “표준가스소비량”이란 가스기기명판에 표기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을 말합니다.

20.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누출점검용가스계량기, 온압보정장치 내장형계량기 등 계량값의 보정, 전송 및 표시를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2017.06.28 개정)

21. “일반계량기”라 함은 “특수계량기”가 아닌 계량기로서 계량값의 보정, 전송 및 표시를 위한 부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계량기를 말합니다.
(2017.06.28. 신설)

22. “듀얼연료설비”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 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

한 설비를 말합니다.(2019.12.30.개정)

23. “연료대체”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2019.12.30.개정)

제 2 장 가스사용 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새로이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유선, 메일 등)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②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유선, 메일 등)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③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⑤ 매매 및 전·출입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신·구 사용자는 변경 내용 발생 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2020. 12. 1. 신설)

제6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타방법(신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 승

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2020. 12. 1. 개정)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타 방법(신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2020. 12. 1. 개정)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2020. 12. 1. 개정)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9.28.신설)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2018.09.28.신설)
6.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승인된 경우(재개발사업조합설립이 승인된 경우 포함) (2018.09.28.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성립 및 변경)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이 규정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월사용예정량이 10만㎥ 이상인 경우, 회사는 기존 또는 신규 수요처에게 연·월별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8.09.28.신설)

제8조(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사용료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 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2019.12.30.개정)

   가.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3.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 전에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 매체에 의하여 회사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 전 가스 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요인이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변경 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 소정의 독촉고지서(전자고지서 포함)를 발부하며, 이때에 미납된 요금의 월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최대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2020. 12. 1. 개정)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발생시점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확인시점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또는 온압보정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 계량기 관리비용+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 온압보정장치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3배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량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단, 전년 동월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량의 산정은 제25조제2항에 의거 산정합니다. (2018.09.28.개정)

④ 제3항 각호의 부당행위로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스사용자 등이 집니다.

⑤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선내의 사용자 공급관, 내관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있는 가스 공급 시설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교체 및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2018.09.28.개정)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2019.12.30.신설)

1.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8]에 따른 통지
2.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제9조(해　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 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2018.09.28.개정)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부터 해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8조1항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1개월이내에 가스 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준 후 가스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가스공급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부터 해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④ 제8조 1항 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 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합니다.(2018.09.28.신설)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 요금 및 그 밖의 채권·채무사항은 제9조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9조에 의한 해약 후에도 회사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가스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② 연소기 등의 관말연결시공(이사시 막음조치 등)은 안전관리상 회사나 제35조에 의한 고객센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018.09.28.개정)

③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2020. 12. 1. 신설)

④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가스사용자의 인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타인의 토지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공급 전 안전점검)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2020. 12. 1. 개정)

② 공급 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2020. 12. 1. 개정)

③ (삭제) (2020. 12. 1. 개정)

제13조(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는 1인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최초로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소·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가스계량기(특수계량기 제외)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주택용(중앙난방용 제외) 이외의 가스사용자는 [별표6]에 따라 가스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을 매월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6]에 정의되지 않은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회사와 협의하여 매월 납부합니다.(2020. 12. 1. 개정)

④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스사용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선택하여 설치할 경우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정기검사 수검결과를 회사에 통지하는 등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017.06.28 개정)

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특수계량기의 검정교체는 가스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특수계량기 가스사용자는 매월 가스요금 청구서에 별도 계상된 [별표6]의 “가스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검정유효기간 도래 시 특수계량기로 검정교체를 실시합니다. 그 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설치의무가 없는 특수계량기 가스사용자의 검정교체 시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여 [별표6]의 “가스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을 매월 회사에 납부한 경우에는 회사는 특수계량기로 검정교체를 실시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특수계량기로 검정교체를 실시합니다.(2020. 12. 1. 개정)

⑥ 10등급(G6)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6]의 교체 및 관리비용을 매월 부담한 가스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교체 및 관리비용을 전액 환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공급(매매)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⑦ 제13조 제3항과 관련,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하는 경우 가스사용자의 사유(공가, 장기부재, 공급중지 등)로 인해 가스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2020. 12. 1. 신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고시에 의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사 착수 전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에 적용하는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수요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말합니다. (2018.09.28.신설)

제15조(공사비 부담)

① 본관, 회사소유의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공급의무 이외의 지역 등에서 가스사용자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공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사시행 전에 공사 예정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② 회사나 시공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이하 “공사부담금”)를 건설표준품셈과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공사비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④ 가스사용자 또는 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파손·멸실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가스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부담합니다.

⑤ 가스사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의 손해는 가스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설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징합니다.

제16조(검사요청)

①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2020. 12. 1. 개정)

②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위해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점검 및 검사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③ 가스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 입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검사결과 위해요인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는 신속히 위해요인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7조(검　침)

① 회사는 가스계량기의 검침을 회사가 정한 매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협의하여 검침일자와 요금납부 일자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경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5. 세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③ 계량기의 위치가 내부에 있어 실제 검침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지시계 및 사용자의 자가검침표 등으로 검침할 수 있습니다.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부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가스단가를 적용합니다. (2018.09.28. 신설)

제18조(계량 단위)

가스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19조(사용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②항에 의한 사용량(㎥)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월간가중평균열량(MJ/N㎥)을 곱하여 사용량(MJ)을 산정합니다.

②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가스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에 의하여 결정(보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계량기의 경우 검침량에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하는 해당지역의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결정) 합니다. (2020. 12. 1. 개정)

③ 가스사용자의 부재,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불분명할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하며, 가스사용량이 변동되었거나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전 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을 월 사용예상량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 사용 시 고장인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25조 ②항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다음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⑤ 주택용 공급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V = \frac{V1 \times (101{,}325 + P)}{101{,}325 + 980.7}$$

V = 제19조 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m^3)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3)

제 5 장 요 금

제20조(요금 산정)

① 가스요금은 가스사용이 시작된 날부터 별표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요금은 원료비(도매사업자의 공급가격)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원료비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도매사업자로부터 통보 받은 가격에 따라 연동 조정되고, 공급비용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이 때에 회사는 원료비의 변동으로 요금이 조정 될 경우에는 조정된 요금을 시행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가스요금이 조정될 경우에는 요금조정일 기준 검침량 또는 월 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1인의 가스사용자에게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주계량기를 경유하여 2개 이상의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주택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사용량요금을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가스가 처음 공급되거나 공급이 중지되어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중 가스공급일수가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 하지

아니 합니다.

⑥ 소정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요금이 부과됩니다.

제21조(가스요금의 구분)

가스요금의 구분은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 취사전용), 일반용(1)·일반용(2),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하고 용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2017.06.28 개정)

①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업무시설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판단은 회사가 주민등록 전입여부,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되며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취사용은 주택용에서 취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취사전용을 적용받는 대상은 제외합니다.
2. 개별난방용은 주택용에서 가스보일러 등의 연소기를 설치하고 개별난방 및 취사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3. 중앙난방용은 주택용에서 가스보일러 등의 연소기를 설치하고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취사전용은 주택용에서 천연가스 외 타 에너지(유류, 집단에너지 등)로 난방을 하면서 취사로만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② 일반용 요금

1. 일반용(1) : 주택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및 연료전지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 중 일반용(2)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017.06.28 개정)
2. 일반용(2) : 목욕탕,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수영장, 체육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한정), 장례식장(화장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017.06.28 개정)

③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 냉방,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⑤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동일 장소 내에 있는 부대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으며,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병합용1, 열병합용2 또는 열전용설비용을 적용합니다.

⑥ 열병합용1 요금

1 자가용열병합용 :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CES용 및 열병합용2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합니다.

2 CES용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⑦ 열병합용2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CES용을 적용합니다.

⑧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⑨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천연가스충전소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⑩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주택용 중 취사, 개별난방 및 연료전지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량 중 월 522.5MJ까지는 취사용, 522.5MJ 초과분은 7(연료전지) : 3(개별난방) 요금을 적용합니다. (부피 12㎥, 10,400kcal 열량기준으로 요금은 월간가중평균열량 적용 환산) (2017.06.28 신설)

제22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회사는 제19조에 의하여 사용량(MJ)에 따라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고지서 포함)를 송달하여 가스사용자

로부터 징수합니다.(2020. 12. 1. 개정)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018.09.28. 신설)

③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분할 검침 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2018.09.28.신설)

⑤ 제1항에 의한 가스요금은 소정의 납기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검침 및 납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2018.09.28.개정)

⑥ 가스사용자가 가스 요금을 기존의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자영업, 소상공인 등(4등급 이하)의 요금 등에 적용합니다.(2018.09.28.개정)

⑦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합니다.(2018.09.28.개정)

⑧ 가스사용료 및 가산금은 납부의무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연체된 요금 중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2018.09.28.개정)

제23조(10원단위 미만 처리)

회사는 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을 계산한 결과 10원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 금액을 절사합니다.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사용공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기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기의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월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제25조(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 공급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월분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원룸)을 제외한 가정용 수요처는 보증금예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43,543MJ이상 가스사용자 (2017.06.28 개정)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제1항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가스사용자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이 예상되어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5. 부도, 기업회생,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개인회생, 파산, 면책결정, 채무조정 등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2020. 12. 1. 개정)
6.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사용자
7.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 준주택의 가스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 (2020. 12. 1. 신설)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 사용량. 단, 신규계약고객은 제외합니다.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 제6항 가호(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

③ 제1항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 중 1회 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보증보험증권의 만기일 도래 10일전까지 기간연장을 해야 합니다. (2018.09.28.개정)

④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회사가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발송한 후 7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8조제2항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2020. 12. 1. 개정)

⑤ 회사는 제9조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합니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2018.09.28.개정)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 확정,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이율(2020. 12. 1. 개정)

제26조(이의신청)

① 가스사용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가스사용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되어 요금납부를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 5%를 적용합니다.(2018.09.28.개정)

④ 가스누출 원인의 책임이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는 누출량을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누출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누출된 월의 요금은 전년 동월사용량, 전월사용량 순으로 비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월 사용 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을 적용하여 초과된 요금을 감면합니다. (2020. 12. 1. 신설)

제 6 장 공 급

제27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회사가 공급하는 가스의 열량은 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 최고열량 --- 44.40MJ/N㎥ (10,600㎉/N㎥)
   최저열량 --- 41.00MJ/N㎥ (9,800㎉/N㎥)
   또한, 상기 열량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로 합니다.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2.45kPa
   최저압력 --- 0.98kPa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으로 변경하여 공급 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릅니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제28조(공급 중지)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급중지일 5일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가스를 계속 공급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해가 예상되어 긴급·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제25조의 요금보증금 포함)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고지서(전자고지서 포함)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체납금의 납입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공급중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2020. 12. 1. 개정)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행하는 검침·검사·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한 때 (2017.06.28 개정)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8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2회이상 사용계약을 요청받고도 거부할 때(2018.09.28.개정)
5.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회사소유의 가스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가스시설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음에도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법 제27조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위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
9.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가스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 (배관절단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2018.09.28.신설)

제29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017.06.28 개정)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 할 때
6.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19.12.30.신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가스공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와 대처방법 등을 사전에 보도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가 대비하도록 홍보합니다.

③ 회사는 가스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8조에 의한 중지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30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가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또는 기타 방법(유선, 메일 등)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0. 12. 1. 개정)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가스사용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하여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장 안 전

제31조(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책임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회사가 시장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 합니다.(2020. 12. 1. 신설)

② 회사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 소유를 포함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관리 및 안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회사의 개선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사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020. 12. 1. 개정)

③ 회사는 가스사용 신청, 가스사용계약, 시설분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2020. 12. 1. 신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2020. 12. 1. 신설)

1.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2020. 12. 1. 신설)

제32조(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① 회사는 법 또는 안전관리규정, 허가관청,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지시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합니다.

1. 1년에 2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거나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합니다.
2. 사용자에게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가스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가스안전기기의 고장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스누출검사를 실시합니다.
3.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합니다.
4. 가스사용시설의 점검 및 검사는 당해 분야의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합니다.
5.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위해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5조에 의한 고객센터 또는 적정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2018.09.28.개정)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1개월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허가관청이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합니다.

제33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설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콕크를 폐쇄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별도의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법, 공급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스사용이 중지(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임의로 가스사용을 재개할 수 없으며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가스사용자는 안전관리상 전출(이사) 또는 전입(입주)시 회사에 연락하거나 적정 자격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가스연소기의 연결·철거 및 배관의 마감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철거 및 연결에 소요되는 부속의 실비 이외의 비용(출장비, 안전점검비 등)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가스사용자가 임의로 안전조치를 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8.09.28.개정)

제34조(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 8 장 기 타

제35조(고객센터 운영) <삭제>(2018.09.28)

제36조(사용장소의 출입)

① 회사는 검침·검사·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시설이나 장소를 출입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출입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제37조(가스성분검사 등)

회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가스의 제 성분 측정결과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통지 받고 정압기 출구에서 측정하는 가스 압력은 회사에서 측정하며, 그 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제38조(문서보관)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018.09.28.개정)

제39조(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경감)

① 회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 별표4에 정한 시설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경감액을 차감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② 회사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평상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을 경감액으로 합니다.(2020. 12. 1. 개정)

③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합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전담기관의 지정일이 한 달 이내인 경우 지정일의 익일부터 지정해제 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경감합니다.(2020. 12. 1. 개정)

④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가스계량기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건축물의 총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 산정용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하는 방법(2020. 12. 1. 개정)

2.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는 방법

⑤ 회사는 가스계량기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스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달에 경감액 만큼을 경감 또는 환급하며, 그 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2020. 12. 1. 개정)

⑥ 산업통상자원부「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가스사용자 중 별표5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하여 가스요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대한 적용대상, 경감수준 및 경감방법, 경감액 처리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

부 칙

1. 승 인 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0일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2. 시 행 일

① 이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4조(시설분담금)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부터 적용합니다.

② 제27조제1항제1호의 열량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최고열량 : 44.40MJ/N㎥ (10,600㎉/N㎥)
- 최저열량 : 42.28MJ/N㎥ (10,100㎉/N㎥)

3. 경 과 조 치

(1)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기 사용하고 있는 저장시설 및 기계시설의 기기 및 탱크는 시설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감정을 실시, 산출된 금액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또는 가스요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동 시설이 건축주 또는 가스사업자 소유로 있을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도시가스 공급개시를 위하여 기 설치된 공급시설의 개수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부 칙 (2017.06.28)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개정일 이전 제13조의 계량기 교체비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주택용(중앙난방용 제외) 이외의 가스사용자에게 적용하는 [별표6]의 일반계량기 관리비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아울러, 개정일 이전 제21조 일반용(1), 일반용(2) 기준에 적용된 가스사용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 칙 (2018. 09. 28.)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12.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감시점 변동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제5조관련)

등 급	2.5	4	6	10	16	25	40
표 준 (최대) 소비량 (㎥/h)	2.5	4	6	10	16	25	40

※ 1시간당 표준(최대)소비량이 40㎥ 초과인 경우 다음의 표준(최대)가스소비량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 표준(최대)소비량(m3/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7 MJ/N㎥(10,144kcal/N㎥)로 합니다. (2018.09.28.개정)

(1) 주택용

○ 취사 전용: 2.5㎥/h (2.5등급)

○ 취사, 난방 겸용 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2) 주택용 외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총 1시간당 표준(최대)가스소비량

【별표 2】

시 설 분 담 금 (제14조관련)

1. 일반 시설분담금
   가. 납부대상 : 전체 가스사용자
   나. 적용단가 : 26,458원/㎥·h
   다.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가. 납부대상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나. 적용단가 : 105,159원/㎥·h
   다.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 - 사용월수)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는 240개월을 적용합니다.
      - 사용월수는 취사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가스사용자의 접속시점부터 전환시점까지의 월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1개월에 미달하는 사용월수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사용 월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40㎥/h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가. 납부대상 : 100m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9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이외 사용자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으로 환산 적용)
   나.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71,974원/m을 적용합니다.
      -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 지역에 가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배관 연장거리(본관, 공급관 및 주택용 인입배관)를 적용합니다.
      - 적용률은 54.91%를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항에 의하여 총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일반 시설분담금을 적용합니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23.07원/㎥ × 가스사용자의 연평균 사용량(601㎥) × 내용연수(20년) × 가스사용세대
- 40㎥/h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다.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해당지역 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공사 시행시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5. 산정 외 세부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고시에 따릅니다.

【별표 3】 <삭제> (2018.09.28.개정)

해 제 수 수 료(제30조관련)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금 액	2,000	부가가치세 별도

【별표 3】

가 스 요 금 표(제8조, 제20조, 제21조 관련)

구 분		소비자 요금		비고
		기본요금 (원/세대)	사용량단가 (원/MJ)	
주 택 용	취 사 용	760	도매요금＋공급비용	
	개별난방	760	도매요금＋공급비용	
	중앙난방	-	도매요금＋공급비용	
	취사전용	2,533	도매요금＋공급비용	
일반용(1)		-	도매요금＋공급비용	
일반용(2)		-	도매요금＋공급비용	
업무난방용		-	도매요금＋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	도매요금＋공급비용	
산 업 용		-	도매요금＋공급비용	
열병합 1	동절기	-	도매요금＋공급비용	
	하절기	-	도매요금＋공급비용	
	기타월	-	도매요금＋공급비용	
열병합 2	동절기	-	도매요금＋공급비용	
	하절기	-	도매요금＋공급비용	
	기타월	-	도매요금＋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	도매요금＋공급비용	
수송용		-	도매요금＋공급비용	

주1) 주택용 중 취사용과 개별난방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522.51MJ까지는 취사용, 522.51MJ 초과분은 개별난방용 요금을 적용하며, 기본요금은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주2) 소비자 요금은 가스도매사업자의 도매요금 변동에 따라 자동 연동하여 시행함.

주3)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주4)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에 따른 보정계수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한 해당지역의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함

【별표 4】(2020. 12. 1. 개정)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제39조관련)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별표 5】(2020. 12. 1. 개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제39조관련)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별표 6】(2020. 12. 1. 개정)

가스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 (제13조 관련)

(단위 :원, 부가세별도)

등급 / 종류	OIML	G1.6	G2.5	G4	G6	G10	G16	G25	비 고
	KS	2.5(3)	4	6(7)	10	16	25	40	
일반 계량기	일반(비특정) 가스사용시설	280	290	320	600	4,870	5,040	7,020	G25초과 별도산정
	특정가스사용시설	280	290	320	1,700	4,870	5,040	7,020	
특수계량기	원격아날로그 계량기	340	350	370	510				
	디지털계량기	590	600	730					
	누출점검용 계량기	780	810	840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1,140	1,130	1,180					

주1) 계량기 등급 : ( )안의 수치는 호칭 변경 전 등급입니다.

주2) 상기 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특수계량기의 교체 및 관리비용은 가장 유사한 종류의 특수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을 적용합니다.

주3) “일반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은 주택용(중앙난방용 제외) 이외의 가스사용자에게 적용하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 교체 및 관리비용”을 그 외 시설에는 “일반(비특정)가스사용시설 교체 및 관리비용”을 적용합니다. 단, 일반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특수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4) “일반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에는 온압보정장치 교체 및 관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압보정장치가 설치된 가스사용자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온압보정장치 교체 및 관리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5)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반용 특수계량기 설치세대의 가스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은 “특수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에서 “일반(비특정)가스사용시설 교체 및 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별지 제 1호 서식】(2020. 12. 1. 개정)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제5조 제1항 관련)

신청정보	
고 객 유 형	□ 개 인 □ 사 업 자 (개 인) □ 법 인 □ 공 공 기 관 □ 외 국 인
사 용 용 도	□ 가정용 □ 영업용 □ 산업용 □ 기타 ( )
소 재 지	
가 구 수	
면 적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년월일	
*주소		E-mail	
*연락처	(전화) (휴대폰)		

*** 부문은 고객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상기 본인은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상기 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변경내역을 통보하여 공급가능 여부를 재협의 하여야 하며, 회사는 관련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2호 서식】(2020. 12. 1. 신설)

도시가스 사용 신청서

신청정보	
신 청 구 분	□ 신규 □ 전입 □ 명의변경 □ 자동이체 □ 기타 ( )
고 객 유 형	□ 개인 □ 사업자(개인) □ 법인 □ 공공기관 □ 외국인
사 용 용 도	□ 가정용 □ 영업용 □ 산업용 □ 기타 ( )
설치장소번호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년월일	
*주 소		E-mail	
*연락처	(전화) (휴대폰)		
*요금청구방법	□ 문자 □ E-mail □ 고지서		

자동이체신청			
거 래 은 행 명	은행	*예금주명	(서명,인)
계 좌 번 호			

*부문은 고객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도시가스사용시설 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번호앞 7자리 (사업자등록번호)	
	④소 재 지	시·군 동 번지 호(통 반) (아파트 동 호)		
⑤변 경 내 용				
시 설 별		변 경 전	변 경 후	
배 관				
연 소 기				
특수연소기기				
기 타				
⑥용 도		주택(취사, 난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난방용, 산업용, 열병합 및 열전용설비용		

공급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JB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가스사용 중지(폐지) 신청서				처 리 기 간
				3일
신청인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번호앞 7자리 (사업자등록번호)	
	④소 재 지	시·군 동 번지 호(통 반) (아파트 동 호)		
⑤중지(폐지예정일)				
⑥중 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⑦사 유				

공급규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가스사용을 중지(폐지)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JB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 5호 서식】

가스사용 중지 해제신청서				처 리 기 간
				1일
신청인	①상호(명 칭)			
	③성명(대표자)		③주민번호앞 7자리 (사업자등록번호)	
	④소 재 지	시·군 동 번지 호(통 반) (아파트 동 호)		
가스사용중지기간				
해 제 요 청 일				

공급규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가스사용 중지를 해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JB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2020. 12. 1. 개정)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신청인	성 명		법인 (시설)명	
	주 소	(전화)		
시설개요	명 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시설장의 성 명		생년월일	
	설치 연월일		입소 정원	
시설설비	가스사용시설의 용적률 산정용 면적	㎡	기타에너지사용 시설의 용적률 산정용 면적	㎡
	단독 가스계량기 설치 유 무 : (단독계량기 / 공동계량기)			

사회복지사업법(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산업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신고합니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기적인 경감시설 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이전·휴업·폐업·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1. 사회복지시설 신고서 사본 1부.
1-1 (감염병 관리시설일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사본 1부
2.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1부. 끝.

※ 첨부서류(필수)

1)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거 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처리 동의

1. **수집 · 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2. **수집 · 이용 항목**
   - 고객정보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번호, 시설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
   - 시설정보 : 시설명칭, 사업의 종류, 법인번호, 시설 소재지 등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4.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고객정보 경감대상자정보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시설명) **대표인(시설장)**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2020. 12. 1. 개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성명 및 연락처	(집 : , 핸드폰 :)	
접수관리번호		
고객유형	□ 개별난방 대상자	□ 중앙난방(공동주택) 대상자
공동주택명		
고객번호 (납부고지서상)		
주 소 (주민동록지)		

신 청 구 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9.7.1. 이전 1급~3급)

□ **국가유공자**(□1급, □2급, □3급) □ **5.18민주유공자**(□1급, □2급, □3급)

□ **독립유공자**(□본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 확인서 발급대상)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경감대상자	성명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세대주		자녀수(다자녀)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가족 □동거인 □기타				

□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가구**(위탁아동 포함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위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녀수 (위탁아동 제외)			위탁보호 결정일	년 월 일

<공통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고객번호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필수)

1)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거 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처리 동의 ["필수"]

1. **수집 · 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2. **수집 · 이용 항목**
   - 고객정보 : 성명, 고객코드, 주소, 연락번호,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 경감대상자(다자녀가구는 세대주) 정보 : 성명, 주소, 연락번호, 자격정보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의 수)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4.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처리 동의 ["필수"]

1. **법적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 2
2. **수집 · 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3. **수집 · 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4. **이용 및 보유 기간 :**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5.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1. **법적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 2
2. **수집 · 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3. **수집 · 이용 항목 :** 장애종류, 장애등급, 차상위종류(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
4. **이용 및 보유 기간 :**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5.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민감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고객정보 경감대상자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위 사항을 숙지하고 민감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경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신청인(법정대리인)은 상기와 같이 경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2019.12.30. 개정)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① 업체명			② 사업자번호	
③ 소재지	본 사 :			
	사업장 :			
④ 관리자	부 서	성 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e-mail)	
⑤ 통지구분	□ 설 치 □ 변 경 □ 폐 쇄		⑥ 설치(변경)일자	
⑦ 설치(변경) 내 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 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제6항 1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 ㅇ ㅇ ㅇ (인)

ㅇ ㅇ 대표이사 귀하